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20381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이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호

피 고 A공제조합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중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8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소송비용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2. 9. 5. 이천시장으로부터 이천시 C(위 지번은 2014. 9. 29. D로 변경) 임야 47,703㎡ 중 23,090㎡에 관하여 '전용기간: 2012. 9. 5.부터 2014. 9. 4.까지, 허가용도: 건설자재야적장 및 부대시설(사무소, 작업장), 진 · 출입도로'로 하여 산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허가')를 받았다.

2) 이천시장은 2014. 8. 26. 참가인에게 이 사건 허가의 전용기간을 2015. 9. 2.까지 연장해 주었고, 2015. 9. 7. 다시 2016. 9. 3.까지 연장해 주었으며, 2015. 5. 8. 이 사건 허가의 전용면적을 23,090㎡에서 22,085㎡로 변경해 주었다(이하 전용면적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임야').

나. 피고의 지급보증

1) 참가인은 2015. 8.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건설자재야적장 및 부대시설(사무소, 작업장), 진 · 출입도로 조성공사'에 관한 산림복구비용예치금의 지급보증을 신청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5. 9. 16. 원고 앞으로 산림복구비용예치금에 대하여 보증금액 288,682,000원, 보증기간 2013. 10. 11.부터 2017. 9. 3.까지로 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같은 날 보증금 증액으로 인하여 보증금액 22,147,000원, 보증기간 2015. 9. 7.부터 2017. 9. 3.까지로 하여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해 주었다(이하 피고의 위 지급보증을 통틀어 '이 사건 지급보증').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청구 경위

1) 참가인은 이 사건 허가 이후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에

건설자재를 적치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수리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이천시장은 2016. 7. 12.경 참가인에게 ‘복구준공검사 전의 목적과 다르게 현재 수리점으로 사용(운영) 중에 있으므로 원상회복할 것’이라는 취지의 원상회복명령을 하였고, 2016. 7. 19.경 재차 같은 취지로 목적사업의 중지 및 철거명령을 하였다.

3) 참가인은 2016. 8. 25. 이천시장에게 전용목적은 ‘건설자재야적장 및 부대시설(창고), 부지조성’으로 하여 이 사건 허가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천시장은 2017. 1. 10. 참가인에게 허가 목적 외 수리점 사용 및 허가 목적 외 불법 물건 적치에 대한 시설물 철거명령 불이행으로 인하여 목적사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허가를 취소하면서 참가인의 위 변경신청을 거부하였다.

4) 원고는 2017. 7. 31. 피고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지급보증 금액의 합계 310,829,000원(= 288,682,000원 + 22,147,000원)을 청구하였다.

라. 참가인의 특정금전신탁 및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 유예 통보

1) 피고는 2017. 8. 14. 참가인에게 원고의 보증금 청구 사실을 알리면서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제반 업무거래가 정지되었음을 통보하였다.

2) 이에 참가인은 2017. 9. 28. 피고에게 이 사건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리면서, 보증금 310,829,000원을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하여 담보를 제공하였으니 업무거래정지 해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3) 참가인과 피고, F은행은 2017. 9. 28. ‘위탁자 겸 수익자: 참가인, 수탁자: F은행, 우선수익자: 피고’로 하여 에스크로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G, H가 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담보채무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여 같은 날 신탁계좌에 참가인 명의로 합계 310,829,000원을 입금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2017. 10. 11. 원고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부득이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보증금 대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마. 관련 소송 경과 등

1) 참가인은 이천시장을 상대로 이 사건 허가 취소 처분 및 산지전용변경허가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18. 5. 15.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고(2017구합6877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19. 9.경 이천시장에게 이 사건 허가의 목적사업이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야 중 절토·성토 비탈면 1,857㎡를 복구면적으로 하여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반려 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라 위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1. 6. 24.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20구합283),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22. 9.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피고의 후속절차 진행 통보 및 이 사건 임야의 원상복구 비용

1) 피고는 2023. 3. 14. 원고에게 관련 소송 종료에 따른 후속적인 보증금 청구 요청 등 보상심사 재개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통보하였다.

2) 기존 건물의 철거 등 이 사건 임야의 원상복구비는 약 3억 3,0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5,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원상복구비 범위 내인 보증금액 합계 310,82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또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에 의하면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의 만료일인 2017. 9. 3.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할 때까지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 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이에 피고는 더 이상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보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기간 내인 2017. 7. 31.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7. 10. 11. 원고에게 소송 결과를 지켜본 후 보증금 대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보증채무의 이행 유예를 요청함에 따라 원고의 2017. 7. 31.자 보증금 청구에 따른 최고의 효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소멸시효제도 특히 시효중단제도는 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한 기산점이나 만료점은 원권리자를 위하여 너그럽게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민법 제174조 소정의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최고받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회답을 받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같은 조에 규정된 6월의 기간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회답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433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7.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최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2017. 10. 11. 원고에게 참가인이 이 사건 허가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부득이 그 결과를 지켜본 후 보증금 대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보증금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피고의 회답이 있을 때까지는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어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6개월의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그 후 피고가 2023. 3. 14. 원고에게 보증금 대급 절차를 유보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면서 관련 소송 종료에 따른 후속적인 보증금 청구 요청 등 보상심사 재개를 위한 후속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통보한 것을 보험금 지급 여부에 관한 회답으로 볼 수 있으나,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3. 9. 8.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10,8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23.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유현영